

학원 생활 규정



서연고·의치대전문관  리셀 기숙학원

택배 관리 및 수령 규정

택배 물품은 1층 택배보관소(1층 담임교사실)에 반별로 보관한다.

1. 학생들은 월~토(공휴일 제외) 16시 전후로 1층 택배 보관소 앞 2,3층 게시판 앞에 새로 부착되는 택배 대장을 확인하여 본인의 택배가 있는지 확인하며 불출은 1층 담임교사실에 저녁식사시간(17:40~18:05)에 진행한다.
2. 택배는 본인이 수령해야 하며, 타인의 택배를 가져가는 행위는 불허한다. 대리 수령은 팔, 다리 부상 등으로 인해 택배 수령을 부탁을 받은 학생이나 담임교사와 동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위 사항을 제외한 타인의 택배 수령 행위는 절도로 간주,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3. 택배 수령 시 명찰을 필히 착용한 상태로 담당 교사에게 택배 내용물을 점검받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명찰 미착용 시 택배 수령 불가) 부득이하게 명찰을 착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수령 시에는, 택배 수령 대장 본인의 이름에 체크 후 수령해야 한다.
4. 고의로 점검을 받지 않고 택배를 수령하는 경우, 택배 수령 대장에 체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5. 당일 게시된 택배 대장에 본인에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 택배의 변질·분실·파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6. 학원에서 소지 금지하는 품목은 택배로도 전달받을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배송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교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의로 금지물품을 은닉하는 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7. 수령시간 외에 택배를 살펴보거나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교육점수 3점**을 부여하며, 택배 내용물 중 금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 택배 주문 시 반드시 상세 주소 란에 반을 표기하여 발송해야 한다.

●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로51번길 94
HS(반명) 홍길동(이름)

전화 이용 규정

1.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전화는 담임교사실의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모님/가족에게 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화는 담임교사실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방송장비실,원장실 등 사용불가)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이용 적발 시, 교육점수 1점을 부여한다.
3. 신입생은 입학 2주 후부터 반별 단체 전화를 시행하며 단체 전화 시간은 각 반 담임교사가 체육 시간, 수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주말로 편성한다.
4. 한 통화에 여러 명에게 동시에 통화하는 것은 금지하며 전화 이용 허가증을 소지한 학생만 담임교사실에 출입하여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 전화는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최대 5분) 전화 이용 중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이 종료되면, 전화를 즉시 종료해야 한다.
6. 허가받지 않고 가족 외 상대(친구, 애인 등)와 통화를 하는 행위,문자전송,인터넷 사용,이어폰 사용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담임교사실 근무자가 즉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7. 학원 법인 휴대전화, 유선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실 근무자가 즉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8. 정해진 시간(최대 5분)을 초과하여 전화를 이용할 경우 담임교사실 근무자가 즉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교육점수 1점을 부여한다.

체육 활동 관련 규정

1. 주 1회 편성하며 운동시간 1시간과 세면 및 개인 정비 1시간, 총 2시간을 편성한다.
2. 체육 시간 10분 전,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숙소에서 운동복, 운동화로 갈아입고 강당 혹은 운동장으로 모여 필히 준비체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반 체육 시간에 체육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바자관에서 자습이 가능하나, 숙소에서 휴식하거나 취침하는 행위는 불허한다.
4. 체육활동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타박상, 골절상, 학생 간의 다툼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임교사 혹은 담임교사실 근무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5. 체육활동 시 단체복,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6. 다른 반 체육 활동에 참여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7. 체육활동 시 학원 외부로 나가는 경우에는 무단이탈로 간주하여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8. 당일 외진/양호실 이용자는 체력단련실 및 강당을 이용할 수 없다. 적발될 경우,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9. 입학 후 2주간은 모든 체육활동이 금지되며, 3주 차부터 반별 체육을 시작한다.
10. 4월 정기휴가 복귀 후 식사 시간에 강당, 체력단련실을 개방한다.
11. 6월 평가원 이후 식사 시간에 운동장 이용 및 구기 종목을 허용한다.
12. 외출 복귀 전/후 2일간, 모의고사 전 2일간은 식사/휴식 시간 체육을 금지한다. 단, 반별 체육은 시행한다.
13. 수능 1달 전부터는 외부 체육활동을 금지한다. 단, 반 체육활동은 수능일 2주 전까지 시행한다.
14. 남녀 지정된 운동 장소에서만 체육활동을 하며 위반 시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요가장 여학생전용, 헬스장 남학생전용)
15. 체육활동 간 남녀의 공동 활동(탁구, 배드민턴 등)은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강당/체력단련실/요가장 이용 규정

1. 체력 단련실, 요가실 및 강당 이용 시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한다.
(특히, 러닝머신)슬리퍼를 신고 이용할 경우 **교육점수 1점**을 부여한다.
2. 반드시 충분한 체조 및 스트레칭을 실시한 후 이용한다.
3.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탈의를 금지한다. (속옷만 입는 행위, 상의 탈의 후 운동 등이 적발 될 경우 교육점수 1점을 부여한다.)
4. 정해진 시간에만 체력단련실 및 강당(4월 정기 휴가 복귀 이후)을 이용할 수 있다. 허가되지 않은 시간에 이용할 경우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퇴실 시간 미준수 포함)
5. 식사 시간 이용의 경우 식사 이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식사 전에 이용한 사실, 식사 순서 미준수 등이 확인 될 경우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6. 대기자가 있는 경우 모든 시설을 **10분 이내로 이용한다.** 독점으로 인한 학생의 민원이 있고, 대기자가 있음에도 10분을 초과하여 이용 한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7. 파손/훼손한 시설에 대하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만약 시설을 고의로 파손/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체력단련실/요가실

1. 벤치프레스 이용 시 반드시 2인 1조로 이용한다. (안전사고 예방)
2. 벤치프레스 원판 교체 시 반드시 바닥에 내려놓고 교체한다.
3. 물, 음료는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다. (미끄럼 사고 예방)
4. 위험한 기구가 많으므로 장난을 절대 엄금한다.
5. 기구 이용 후 바닥에 던져 놓지 않는다. (파손 주의)
6. 기구 이용 후 정리 정돈을 필수로 해야 한다.
7. 음식물(간식, 과자류 등) 취식 할 수 없다.

강당

1. 강당에서는 탁구, 배드민턴만 가능하다. (축구, 족구 등 금지된 종목을 할 경우에는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2. 공을 벽에 던져 튕기며 운동할 수 없다. (벽 손상 가능)
3. TV 및 방송장비 등 고가 장비가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한다.
4. 강당 방송실은 학생의 출입을 금지한다.
5. 에어컨을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고장, 파손 위험)

양호실 이용 규정

1. 양호실은 강당 뒤편 1층에 위치해 있다.
2. 1회 1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담임(짜반)교사 및 담임교사실 근무자(학생관리팀)가 학생의 건강상태에 따라 재량으로 추가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3. 담임(짜반)교사 근무 시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고 허가증을 발급 받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임(짜반)교사 부재 시에는 담임교사실 근무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할 때는 담임교사실에 비치된 양호실 이용대장에 본인의 반과 이름, 입실시간을 기재하고 양호실에 입실한다.
4. 양호실 이용시에는 담임실 내 양호실대장에 성명과 입실시간을 기록 후 명찰을 두고, 퇴실 후 담임실에 퇴실 시간을 기록 후 명찰을 찾아간다.
5. 퇴실 전 침구류를 정리하고 담임교사실에 보고 후 퇴실 할 수 있도록 한다. 퇴실 시에도 양호실 이용대장에 퇴실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6. 양호실을 이용자는 **당일 심야자율학습 및 체육활동(개인 및 실내체육 포함)**을 금지한다.
7. 양호실은 잠을 보충하는 곳이 아니므로 졸음으로 인한 이용은 엄금하며, 담임(짜반)교사 또는 담임교사실 근무자(학생관리팀)의 판단 하에 상습 이용자의 경우 양호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8. 담임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양호실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대장 미작성, 허위작성(입실, 퇴실시간 허위기재 등)한 경우에는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9. 양호실 내의 침구, 기타 물건 등을 가져가는 행위를 금지하며 적발 시 절도로 간주하여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10. 남녀 간 지정 양호실 외 절대 출입금지 적발 시 **강제퇴원** 조치한다.

매점 이용 규정 /옥상 사용 규정

1. 매점은 강당 2층에 위치해 있다.
2. 매점은 점심 및 저녁식사 시간에만 이용 가능하다.
3. 홀수 달은 여학생이 점심 식사 시간, 남학생이 저녁 식사 시간 / 짝수 달은 여학생이 저녁 식사 시간, 남학생이 점심 식사 시간에 이용 할 수 있다. (매달 1일 변경)
4. 정해진 시간 외에는 이용 할 수 없으며, 이용 시간 위반 시 **교육점수 3점**을 부여한다.
5. 매점은 항상 청결하게 이용해야 하며,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한다. 무단 투기 시 **교육점수 1점**을 부여한다.
6. 옥상은 정해진 개방시기/개방시간에만 사용 가능하다(사전 공지)
7. 옥상은 우천시 출입이 불가하다.
8. 옥상 내 출입금지 구역은 진입하지 않도록 한다. 적발시 교육점수 -3점을 부여한다.

큐브(유료복사기) 사용 규정

1. 유료복사기는 1층 로비에 위치해 있다.
2. 유료복사기는 쉬는 시간, 식사 시간, 힐링 타임에 이용 할수 있다.
3. 남녀 지정된 유료복사기만 이용 할 수 있다. 위반 시 **교육점수 2점** 부여한다.
4. 한번이용에 30페이지 이하 출력 할 수 있으며, 30페이지 이상은 힐링 타임에 출력 할 수 있도록 한다.
5. 유료복사기는 출력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출력 이외 용도로 사용 시 **교육점수 3점**을 부과한다.
6. 출력은 학습목적으로만 이용해야하며 학습목적 이외 출력물 인쇄 시 **교육점수 1점**을 부여한다.
7. 유료복사기 사용 시 정숙해야하며 대화시 **교육점수 1점** 부여한다.
8. 유료복사기 고장 시 담임실에 이야기하여 조치 받을 수 있도록 한다.
9. 본인의 부주의로 카드 분실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외진 이용 규정

외진은 월~토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한다.

- 내과, 치과, 한의원 외 다른 과의 경우는 화요일, 금요일에만 가능하다

1. 외진 희망자들은 외진 전날 종례 시간 전까지 담임(짜반)교사에게 증상 보고와 함께 외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담임(짜반)교사에게 외진 확인증을 발급받아 외진 출발시간까지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외진 당일에는 **외진확인증, 외투, 마스크, 지갑, 단어장** 등을 지참하여 9시까지 1층 로비에 집합한다. 복장은 단체복으로 통일한다. (외투 허용)
2. 가방은 휴대할 수 없다.
3. 공휴일, 정기외출 전·후일 및 모의고사일 등 특정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4. 수액을 맞거나 도수치료 등으로 복귀가 늦어지는 학생들은 택시로 개별 복귀한다. (자비 부담, 휴대폰 불출 금지)
5. 학원으로 복귀 시 반드시 외진 담당 교사에게 품신 검사를 받은 후 바자관, 강의실로 이동한다.(하차 후 담당교사 즉시 검사)
6. 진료 결과 특이사항은 외진 담당 교사에게 먼저 보고하며, 학원 복귀 후 담임선생님께 보고한 후 부모님께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7. 진료중 해당 병원 이탈 시 **교육점수 3점**을 부여한다.
8. 흡연 및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9. 진료 받지 않거나 영수증 분실 등으로 진료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10. 병원 전화로 외진 담당교사를 제외한 사람과 통화시 **교육점수 3점**을 부여한다 병원과 약국 외의 모든 장소(예: PC방, 당구장, (코인) 노래방, 카페, 편의점, 문구점, 식당, 가족/친척/지인 집 등)에 출입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11. 외진 시 병원에서 고의로 진료 시간을 지연시켜 외진 복귀 차를 타지 않거나 병원 내/외에서 가족, 지인을 만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12. 외진 간 남녀대화 및 물품전달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태블릿PC 이용 규정

1. 바자관 내 담임 책상 위 태블릿PC 보관함에 보관하며 이용 시 반출했다가 이용이 종료되면 충전기에 꽂아 필히 보관함으로 정위치 시켜 놓아야 한다.
2. 1일 최대 3시간 30분 이용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의 이용 시간에만 이용해야 한다. 추가 수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필히 담임(짜반)교사의 허락을 구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습 목적 외 이용 방지를 위해 밝기를 높이고, 독서대 등에 위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반 시 **교육점수 1점**을 부여한다.
4. 태블릿PC 이용은 수업이 없을 때, 바자관 내에서 지정된 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바자관 외부로의 반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또, 이용 도중 학습 목적 외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담임(짜반)교사 및 학생관리팀에서 불시에 태블릿PC를 점검할 수 있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는 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5. 임의로 패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배경 화면 변경(연예인, 가족/애인 사진 등) 또한 금지한다. **위반 시 교육점수 3점**을 부여한다. 기타 태블릿의 설정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6. 본인이 이용하는 태블릿PC에 학습 외 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학습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 8항과 동일하게 **교육점수 1점**을 부여한다.
7. 이어폰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때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귀마개 대응으로 이용할 수 없다. 위반 시 **교육점수 1점**을 부여한다.
8. 인터넷 강의 수강의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학습목적 외 다른 용도로의 이용을 일체 불허한다. 위 사항을 **1회 위반 시 교육점수 3점 부여 및 태블릿PC 1주일 이용금지, 2회 위반 시 근신 1주(교육점수 5점) + 태블릿PC 1주일 이용금지, 3회 위반 시 강제 퇴원 조치한다.**
9. 이용 금지 조치 대상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태블릿PC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 금지 학생에게 태블릿PC를 대여해 주는 경우 빌린 학생(금지 학생)에게는 **교육점수 3점**, 빌려준 학생에게는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10. 태블릿PC 파손/훼손 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만약 고의로 파손/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11. 메가캐스트 시청 시 **교육점수 1점**을 부여한다.(qube 학습 외 사용금지)

근신 처분 관련 규정

근신 처분/강제 퇴원은 **교육점수 누적 5점 이상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원장, 파트장 해당 학생 담임교사로 구성된다.

1. 징계위원회에서 근신 처분이 결정되면 해당 학생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근신 처분을 통보하며 학생과 담임교사는 통보일 다음 날 아침부터 근신을 시작한다.
2. 근신 처분은 처분 1회 차에는 1주일, 2회 차에는 2주 혹은 퇴소(강제 퇴원 처리), **3회 차에는 강제 퇴원**한다.
3. 대상자는 근신 완장을 착용하고 08시~22시까지 근신 장소(1층 로비)에서 서서 근신을 한다. 단, 서서 근신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 소견서가 있을 시 착석하여 근신을 진행하며 근신 일수는 2배로 늘려서 진행한다.
4. 배부되는 근신 상세 일과표에 개인 시간표와 근신 관련 규정을 부착한다.
5. 수업 수강은 가능하며, 수업 수강을 포함한 모든 이동 시 입시담임실 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이동해야 한다. (수업은 시작 5분 전 이동)
6. 쉬는 시간은 빈 강의실을 이용한다.
7. 근신이 시작되는 첫날과 근신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 22시에 반성문을 작성하여 담임교사 책상에 뒤집어 올려놓은 뒤 바자관으로 복귀한다.
8. 개인 및 반별 체육, 힐링 타임, 심야 자율학습, 태블릿PC 이용, 인터넷 강의 수강, 전화사용이 금지된다.
9. 정기 외진을 이용할 경우, 근신 일수에서 하루를 추가하며, 외출/박 시 외출/박 날짜만큼 근신 일수가 추가된다. 또, 양호실 이용 시에는 해당 시간만큼 근신 시간이 추가된다.
10. 근신 시간 중 학원 규정 위반(지각, 시간 미준수, 잡담 등)과 근신 중 금지규정 위반(신문 읽는 행위, 전화 사용, 힐링 타임 및 체육활동) 적발 시 근신이 하루 연장되며, 무단 이동·태도 불량 이 교직원 중 누구에게라도 적발될 시에는 근신을 종료하고 즉시 강제 퇴원 조치한다.
11. 근신 처분 대상자의 관리 및 감독은 주간 학생관리팀이 실시한다. 11항에 기재된 학원 규정 위반 행위 등이 적발될 시에, 주간 학생관리팀의 근신 관리 위원회에서 협의 후에 근신 처분자의 근신 연장 등을 논의하며, 결정된 사항은 담임선생님과 학생에게 통보한다. 반대로 근신 학생의 태도 등이 우수한 경우 근신 일수 감면을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2. 근신장소에서는 스탠드 책상만 사용한다.(작은 책상 사용 금지)

묵언수행 관련 규정

* 묵언 수행은 본인의 학습 및 생활의지를 다지고자 하는 각오이다.

1. 묵언수행 기간은 1주일이며 방법은 일과 중 학원 전 공간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단, 일과 종료 후 취침 전과 반별 체육 시간은 예외.)
2. 묵언수행을 원하는 학생은 '**묵언수행 각서**'를 작성하며 작성한 각서는 해당 반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반 게시판에 부착한다.
3. '**묵언 완장**'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완장을 바자관이나 숙소에 두고 이동할 경우 묵언수행은 종료되며 **교육점수 2점**이 부여된다.
4. 묵언 종료 시에는 완장을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또, 일과 종료 후 숙소, 반별 체육 시간을 제외한 시간 및 장소에서 대화를 하거나 소음을 내는 행위가 적발될 시 즉시 묵언수행을 종료하며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5. 묵언수행 중 반별 체육시간에는 운동이 가능하나, 식사 시간, 힐링 타임에는 체육 활동을 할 수 없고 힐링타임 시간에는 바자관에 남아 자습을 진행해야 한다. (숙소 휴식 불가) 이를 어길 시에는 즉시 묵언을 종료하고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6. 묵언수행 최대 인원은 **반별 5명**이며, 동시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담임선생님 재량으로 최대 인원 내에서 학생을 선발한다.